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1395 호 2023. 4. 10.(월)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5호[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를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 금액을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 금액 조정(제4조제1항)

- (당초) 5천만원 이내 → (변경) 6천만원 이내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